

#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94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13.

발 의 자 : 이수진 · 임미애 · 박지원  
안태준 · 소병훈 · 김 윤  
남인순 · 서미화 · 전진숙  
전종덕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

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아동수당의 내용,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.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에서 수급자격을 알 수 있는 경우,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조사 등을 거쳐 아동수당을 제공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- 가.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규정 삭제(안 제6조 삭제)
- 나. ‘아동수당지급신청자’를 ‘아동수당지급미결정자’로 규정, 보호자의 수급의사 확인 근거 신설(안 제7조)
- 다. 아동수당 지급결정 통지 대상을 ‘아동수당지급신청자’에서 ‘보호자

등'으로 규정(안 제9조)하고, 지급 시기 또한 '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'에서 '출생한 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'로 규정(안 제10조)

##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의 제목 “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”을 “아동수당의 지급 등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및 신청방법 등”을 “등”으로 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(이하 “아동수당지급신청자”라 한다)”를 “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아동(이하 “아동수당지급미결정자”라 한다)의 보호자”로, “아동수당지급신청자 및”을 “아동수당지급미결정자 및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아동수당지급신청자”를 “아동수당지급미결정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.

다만,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아동수당지급신청자”를 “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(이하 “보호자등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수급

아동”을 “아동수당지급미결정자 또는 수급아동”으로, “아동수당”을 “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보호자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10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수급아동이 출생한 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하되,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의 아동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보호자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.

제13조제1항제1호 후단 중 “지급 신청”을 “지급 결정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)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9조, 제10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출생한

아동부터 적용한다.





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(이하 “아동수당지급신청자”라 한다)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·변경·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,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수당지급신청자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

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·변경 등의 확인·조사 또는 아동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

-----  
-----  
-----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아동(이하 “아동수당지급미결정자”라 한다)의 보호자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----- 아동수당지급미결정자 및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----- . 다만,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아동

수당지급신청자와 그 가구원, 수급아동의 보호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1. 삭 제

2. ~ 8. (생 략)

③ ~ ⑤ (생 략)

⑥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아동수당지급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, 조사·질문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.

⑦ (생 략)

제9조(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)

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·질문 등을 거쳐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·

수당지급미결정자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2. ~ 8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⑦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)

① -----

-----

-----

-----



제10조(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. 다만, 수급아동이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. 다만,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이

제10조(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수급아동이 출생한 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하되,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의 아동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. -----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보호자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.



② · ③ (생략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